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2-130 관련
----------	-----------

발의년월일 : 2022. 12. 19.

발의자 : 고병준

1. 수정이유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의 제공·우선 선정에 대하여 우리구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가.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

2. 특산품 또는 기념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

4.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나. 제3조제1항 중 “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구 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및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0호) 중 “물품”을 “물품 및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3. 구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서비스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되, 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1.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
2. 특산품 또는 기념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원
4.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구 내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및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

가증권 등”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3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중전의 제10호) 중 “물품”을 “물품 및 서비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삭제한다.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3. 구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및 공예품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서비스 등

장이 위촉한다.

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
이 풍부한 사람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
원

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
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
적 지식을 갖춘 사람 등 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⑤·⑥ (생략)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
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생
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
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
인 또는 기업이 구 내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
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
기 위하여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운용할

③·④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

----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및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

-----.

<삭 제>

수 있다. 이 경우 구에서만 통용
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
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
품 등

2.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 축
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
은 축산물

<신 설>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
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
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② -----

-----.

1. 구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
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삭 제>

<삭 제>

3. 구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및
공예품

<삭 제>

<삭 제>

<삭 제>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삭 제>

8. 구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 브랜드 사용 품목

<삭 제>

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

<삭 제>

10.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2. -----

-----물품 및 서비스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삭 제>

12. (생략)

4. (현행 제12호와 같음)

<신 설>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유가증권, 서비스 등

13. 기타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삭 제>